

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안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반도체클러스터 지정신청서) 「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13조제1항에 따른 반도체클러스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.

제3조(규제 개선 신청서)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규제 개선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.

제4조(인가·허가 등의 신속처리 신청서 등)

①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인·허가등 신속처리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.

② 영 제30조제5항에 따른 인·허가등 신속처리 결과통보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.

제5조(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서 등)

① 영 제34조제2항에 따른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.

② 영 제34조제3항에 따른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.

제6조(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 지원 신청서) 영 제36조제1항에 따라 반도체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된 계약학과 및 학부(이하 “계약학과 등”이라 한다)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1. 정관 1부(사립학교의 경우만 제출한다)
2. 반도체사업 관련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에 관한 사업 계획서 1부
3.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

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.

제7조(전문연구인력의 학위 기준) 법 제17조제4호가 정하는 “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학위”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력을 말하며, 학위 취득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.

1. 「고등교육법」 제35조에 따른 석사 이상의 학위
2. 외국의 대학에서 석사과정과 같은 수준 이상이라고 인정되는 과정을 마친 경우